

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『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』 일부 개정

3. 주요내용

-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 : 경상남도 세정과-12080(2009.10.06)호 관련임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법령상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(2009. 9. 29)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 절차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.

- 검토결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고 사료 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

8. 심사결과 :

- 2010. 1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